

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1. 5. 30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1. 6. 5

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5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2단계 「조례·규칙등」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대상인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신청인 소유공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함.
- 권리의무 및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개정조례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않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6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